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월 15일, 조경태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월 1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2.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12.4.)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 상정, 소위심사보
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조경태의원)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변지역을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활용하여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거나 농수산물 공판장·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 등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으로 정의하고, 사업 대상 지역(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에 대한 지정과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사업이 완료된 경우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사업 완료 이후에도 해당 구역에서 계속하여 행위 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해제 사유에 공사완료 공고를 한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지정이 해제된 경우 사업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따른 인가, 허가 등도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으로써 농업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을 지정·고시하

는 경우 해당 구역에는 현행법 제9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됨.

이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① 건축물의 건축, ② 인공구조물의 설치, ③ 토지의 형질변경, ④ 토
석·자갈·모래의 채취, ⑤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⑥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⑦ 식물재배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이러한 행위제한은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
진이라는 공용필요에 따라 토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현행법 제8조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로 ①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
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②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
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③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의
세 가지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준공검사 이후 공사완료가 공고되었음에도 농업생산기반
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여전
히 행위제한 등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사업의 공사완료 공고를 지정 해제 사유에 추가함으
로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을 해
제할 수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임.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공사가 완료되는 경우 ① 농업생산

기반시설등활용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 등이 지속될
필요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유사 입법례의 경우에도 공사완료를 공고한 경우 해당 구역
의 지정권자가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함.

다만, 개정안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해제 사유를
“제21조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
련하여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임.

즉, 개정안 제8조만으로는 ‘제21조에 따른 공사’가 의미하는 바를 명
확하게 알기 어려우므로 ‘제21조에 따른 공사’가 ‘농업생산기반시설등
활용사업 공사’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신설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인 공사완
료에 사업명칭을 추가하여 명확히 하고,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변경하
는 사항으로 수정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9.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에 대한 수정안

나.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2. .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정이유

신설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인 공사완료에 사업명칭을 추가하여 명확히 하고,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 가.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해제 사유인 공사완료에 사업명칭을 추가하여 명확히 함(안 제8조).
- 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하기 위하여 부칙을 수정함(안 부칙).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1항제4호 중 “공사완료의”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
공사완료의”로 한다.

안 부칙 중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을 “공포한”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8조(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해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제8조(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해제 등) ①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21조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경우</u>	제8조(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해제 등) ① --- ----- ----- ----- ----- ----- ----- ----- ----- ----. 1. ~ 3. (개정안과 같음) 4. ----- <u>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 공사완료의</u> ----- -----
② (생략) <u><신설></u>	② (현행과 같음) <u>③ 제1항에 따라</u>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u>농업생산기반시설 등활용구역의 지정 이 해제된 경우로 서 제15조에 따른 인·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 허가등은 효력을 상실한다.</u> <u>부칙</u> <u>이 법은 공포 후 6</u> <u>개월이 경과한 날</u> <u>부터 시행한다.</u>	<u>부칙</u> <u>-----공포한-----</u> <u>-----.</u>
--	---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1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제15조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등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해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 설></u> ② (생략) <u><신 설></u>	제8조(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해제 등)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21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시설등활용사업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경우</u>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제15조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등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u>